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1. 4.



원 종 진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-

#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원종진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# 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라 실시되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물론, 조례입법 과정에 달서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참정권 확대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# □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3조에서는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본이념,
- 안 제5조에서는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- 안 제7조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, 설문조사 규정,
- 안 제8조에서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법학교 등의 교육 시행 규정,
- 안 제9조에서는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.

### □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11일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.

### 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조례의 제·개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여 주민의 참정권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[원종진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00821037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1. 4. 8.

발 의 자: 원종진, 조복희, 배지훈  
박정환, 윤권근

## 1. 제정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라 실시되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물론, 조례입법 과정에 달서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참정권 확대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구청장은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함(안 제5조)
- 다.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등 개최,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- 라. 구청장은 조례입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입법학교 등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마.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(안 제9조)

## 3. 참고 사항

- 가. 제정조례안: 붙임 참조
- 나.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
- 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달서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와 조례입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
- 가.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
- 나.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
- 다.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

2. “조례입법”이란 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위해 입법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주민참여”란 주민이 조례입법 및 그 과정에 참여하고 구 및 구의회가 입법과정에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이념) ①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초로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.

② 주민참여는 주민과 구, 구의회가 협력하여 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.

제4조(구청장 등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충분한 조례입법 정보를 제공하여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주민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기초로 조례입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) 구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6조(주민참여 절차 및 방법) 주민이 조례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,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제7조(의견수렴 등) ①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은 제1항의 간담회 등 개최 외에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8조(조례입법학교 시행) ① 구청장은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,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결과 공개) 구청장은 주민참여에 따라 제·개정된 조례를 구보,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#### 부            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【 관 계 법 령 】

### □ 주민자치법

제15조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“19세 이상의 주민”이라 한다)은 시·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(連署)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4. 1.>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 2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
  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-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. <신설 2009. 4. 1.>

1.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2.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부담금의 부과·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
3.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 명부에 적어야 하며,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·개정안 및 폐지 안(이하 “주민청구조례안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4. 1., 2011. 7. 1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

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,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4. 1.>

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4. 1.>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·결정하되,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,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,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9. 4. 1.>

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,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,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9. 4. 1.>

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09. 4. 1.>

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9. 4. 1., 2011. 7. 14.>

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,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. <개정 2009. 4. 1.>

⑪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 4. 1.>